† 새로운 서약, 새로운 희망 †

재단법인 대구가톨릭청소년회

수신자 : 각 시설장
(경 유) : 업무 담당자
제 목 : (재)대구가톨릭청소년회 산하시설 법정의무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

---

1. 귀 기관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
2. 본 법인에서 법인사무국과 산하시설의 모든 직원들에게 매년 실시했던 법정의무교육의 집합교육이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우려 및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으로 어려워졌습니다. 이에 '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' 및 '장애인 인식개선 교육' 과 관련된 교육안내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교육하시기 바라며, 붙임파일에 있는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0. 12. 18.(금) 까지 법인 사무국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1.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안내 1부.
2.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 1부. 끝.

재단법인 대구가톨릭청소년회 이사장 직인생략

수신자 군위군청소년수련원장, 대구광역시교육청가정형Wee센터장,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장, 대구청소년창의센터장, 대안교육센터장, 무학연수원장

전결 2020.11.13.

담당 **김성연**



사무국장 **황성재**

협조자

시행 대가청 2020-077(2020. 11. 13.) 접수

우 41969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/ E-Mail : youth@dgca.or.kr
전화 053-250-3069 전송 053-250-3060 /

/공개

<붙임1>
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안내

1. 교육내용

1)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
2)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
3)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
4)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
2. 교육목적

-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3. 교육시간

-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는 매년 1회 이상, 1시간 이상 실시

4. 교육형태

- 전문 외부 강사의 강의를 통한 교육실시
-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통한 기관·시설 자체교육
- 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 가능(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가능)

5. 교육방법

- 전문 외부 강사의 강의를 통한 교육
- 교육 자료를 통한 자체교육 및 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 관련 자료

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moel.go.kr) 접속 후 정보공개 카테고리 - 기타정보 클릭
② 자주찾는자료실에서 '성희롱 예방교육' 검색 -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(사업장 교육자료 활용) 클릭 - 내용 중 ☞동영상 바로가기 클릭 클릭 - '직장 내 성희롱 얼마나 알고가요? 재생
③ 자주찾는자료실에서 '성희롱 예방교육' 검색 -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(리플릿, 매뉴얼 등-사업장 교육자료...) 클릭 - 첨부파일 리플릿, 매뉴얼, 포스터 다운로드 후 게시 또는 배포
④ 동영상 및 매뉴얼을 통한 사업장 내 자체교육 실시

6. 결과보고서 제출

-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
- 집합교육 시 현장사진 및 교육 참석자 명단을 첨부
- 제출기간(2020. 12. 18.)에 맞춰 법인사무국 메일(youth@dgca.or.kr)로 제출

7. 교육 결과보고서[양식]

- p2~3 참조하여 작성
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결과보고서

시설 또는 기관명			
소재지 (시도 및 시군구)		시설장 또는 기관장 성명	
교육일시		교육장소	
교육대상	*기관 내 신고의무자수*	참석인원	*신고의무자 중 참석인원*
이수시간	*교육실시 시간*	교육방법	*집합교육, 자체교육, 교육자료 배포 중 선택*

교육내용

(예시)

1.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

2.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사례

3.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

4.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

5.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 등

<증빙자료>

※ 교육자료 배포 및 게시의 경우 교육내용 생략 가능.
교육진행(배포·개시) 사진 및 교육 참석자 명단 첨부.

*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자 명단

일시 : 2020. . .

No.	성 함	소 속 / 직 급	서 명	비 고

<붙임2>

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

1. 교육내용

1)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
2)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
3)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
4)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

2. 교육목적

-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확대

3. 교육시간

- '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'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매년 1회, 1시간 이상 실시

4. 교육형태

- 집합교육, 원격교육, 체험 교육의 형태로 실시 가능
-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배포,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교육 실시

5. 교육방법

- 교육 자료를 통한 자체교육 :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(edu.kead.or.kr)
  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홈페이지 접속, 회원가입 및 로그인
  ② 자료실 카테고리 - 교육자료실 클릭
- 전문 강사 초빙 또는 교육기관 위탁교육 :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(edu.kead.or.kr)
  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홈페이지 접속, 회원가입 및 로그인
  ② 전문강사/교육기관 찾기 카테고리 - 전문강사 찾기 클릭 - 원하는 강사의 교육신청 클릭
  ③ 전문강사/교육기관 찾기 카테고리 - 교육기관 찾기 클릭 - 원하는 교육기관의 신청하기 클릭
- 교육자료 배포 및 게시 :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가능
 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moel.go.kr) 접속 후 정보공개 카테고리 - 기타정보 클릭
  ② 자주찾는자료실에서 '장애인 인식개선교육' 검색 -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내 클릭
  ③ 첨부파일 '2020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리플릿(국문)' 다운로드
  ④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배포하거나 사업장 내에 게시,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

6. 결과보고서 제출

-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(교육자료 배포 및 게시 경우 교육내용 생략 가능)
- 교육진행 사진 및 교육 참석자 명단을 첨부
- 제출기간(2020. 12. 18.)에 맞춰 법인사무국 메일(youth@dgca.or.kr)로 제출

7. 교육 결과보고서[양식]

- p5~6 참조하여 작성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서

시설 또는 기관명			
소재지 (시도 및 시군구)		**시설장 또는 기관장 성명**	
교육일시		**교육장소**	
교육대상	*기관 내 신고의무자수*	**참석인원**	*신고의무자 중 참석인원*
이수시간	*교육실시 시간*	**교육방법**	*집합교육, 원격교육, 체험교육, 교육자료 배포 중 선택*
교육내용			

(예시)

1.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
 -
 -
2.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,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
 -
 -
3.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
 -
 -
4. 기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
 -
 -
5. 질의 응답
 -
 -

<증빙자료>

※ 교육자료 배포 및 게시의 경우 교육내용 생략 가능.
 교육진행(배포·개시) 사진 및 교육 참석자 명단 첨부.

*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참석자 명단

일시 : 2020. . .

No.	성 함	소 속 / 직 급	서 명	비 고